연말정산 및 급여담당자를 위한 HIT THE SPOT SERIES 2

2017년 세법개정안(2018.01.01. 이후 시행 등) 중
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소급적용되는 **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에 사용한 분에 대한 공제율의 상향조정(30%→40%)**하는 안(案)이 2017년 12월초에
본회의심의를 통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16년 귀속 연말정산	2017년 귀속 연말정산
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공제율 ·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– 신용카드(전통시장 · 대중교통제외) : 15% – 현금영수증(전통시장 · 대중교통제외) : 30% – 직불카드등(전통시장 · 대중교통제외) : 30% – **전통시장사용분 : 30%** – **대중교통이용분 : 30%**	**전통시장 · 대중교통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확대** (좌 동) – **전통시장사용분 : 40% (17~18년 지출분)** – **대중교통이용분 : 40% (17~18년 지출분)**

실무적용 참고사항

· 전통시장 · 대중교통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당초 전산로직을 변경하여야 하나,
· 당사가 출간한 「2017년 연말정산 실무」 교재에는 상기 개정(안)을 미리 반영하여,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계산방식을 기술하고 있으므로, 당사의 본교재(p383 이후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YOUR BEST HRD PARTNER 씨에프오아카데미 www.cfoi.kr
교육문의 TEL (02) 501-2322 FAX (02) 561-6581